

인천광역시서해구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http://www.seo.incheon.kr/>

선

기관의장

람

제2021호

2026. 8. 12.(수)

차 례

공 고

○인천광역시서해구 공고 제1827호

인천광역시 서해구 노인여가복지시설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1

인천광역시서해구공고 제2026-1827호

인천광역시 서해구 노인여가복지시설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서해구 노인여가복지시설 운영·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인천광역시 서해구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6. 8. 12.

인천광역시 서해구청장

1. 자치법규명

○ 인천광역시 서해구 노인여가복지시설 운영·관리 조례

2. 개정이유

○ 「노인복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의 법정 종류(노인복지관, 경로당, 노인교실)에 맞춰 기존 “노인문화센터”의 명칭을 “노인복지관”으로 시설 명칭을 변경·정비함으로써 노인여가복지시설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별표 1의 「인천광역시 서해구 노인여가복지시설의 명칭 및 소재지」에서
“노인문화센터”의 명칭을 “노인복지관”으로 변경(안 별표1)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6년 8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인천광역시 서해구청장(참조: 노인장애인과, 전화 032)560-4902, 팩스 032)560-2741)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인천광역시 서해구 노인여가복지시설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노인복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의 법정 종류(노인복지관, 경로당, 노인교실)에 맞춰 기존 “노인문화센터”의 명칭을 “노인복지관”으로 시설 명칭을 변경·정비함으로써 노인여가복지시설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별표 1의 「인천광역시 서해구 노인여가복지시설의 명칭 및 소재지」에서 “노인 문화센터”의 명칭을 “노인복지관”으로 변경(안 별표1)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노인복지법」 제36조,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4조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감사실, 가정보육과와 합의

라. 기 타: 해당사항 없음

인천광역시 서해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서해구 노인여가복지시설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서해구 노인여가복지시설 운영·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인천광역시 서해구 노인여가복지시설의 명칭 및 소재지 (제1조의2 관련)

명 칭	주 소
인천광역시 서해구노인복지관	인천광역시 서해구 신석로 121번길 10(석남동)
인천광역시 서해구가좌노인복지관	인천광역시 서해구 장고개로 387(가좌동)
인천광역시 서해구연희노인복지관	인천광역시 서해구 승학로 263(심곡동)

관계 법령 발췌

□ 노인복지법 제36조

제36조(노인여가복지시설) ①노인여가복지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로 한다. <개정 2007. 8. 3.>

1. 노인복지관 : 노인의 교양·취미생활 및 사회참여활동 등에 대한 각종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하고,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과 소득보장·재가복지, 그 밖에 노인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2. 경로당 : 지역노인들이 자율적으로 친목도모·취미활동·공동작업장 운영 및 각종 정보교환과 기타 여가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소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3. 노인교실 : 노인들에 대하여 사회활동 참여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건전한 취미생활·노인건강유지·소득보장 기타 일상생활과 관련한 학습프로그램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4. 삭제 <2011. 6. 7.>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4조

제24조(노인여가복지시설의 이용대상자 및 이용절차) ①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이용대상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8. 1. 28.>

1. 노인복지관 및 노인교실 : 60세이상의 자

2. 경로당 : 65세이상의 자

3. 삭제 <2011. 12. 8.>

②제1항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노인복지관 및 노인교실 이용대상자의 배우자는 60세미만인 때에도 이용대상자와 함께 이용할 수 있다. <개정 2008. 1. 28.>

③노인여가복지시설의 이용은 시설별 운영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